

● 노동이사후보선거관리규정(0411)

제정 2019. 6. 26. 규정 제5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6조 제5항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에 대한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제5조(소집 및 공고)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 사유 발생에 따른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자 모집, 선거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6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전자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노동이사 후보 득표 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단,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을 선거일로 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20일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임원추천위원회 호선)과 노사대표 각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입후보자 등록

제3조(권한) 위원회는 본 규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 권한을 가진다.

제8조(입후보자 등록) ① 노동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선거권자의 5%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는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권자는 여러 명의 입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협조) 위원회에서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공사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

②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하며,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되, 그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게시한다.

②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견 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재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3조(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위원회는 제12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 결정, 공사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인명부

제14조(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사장, 감사 및 본부장(특1급 포함)은 제외]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단, 선거일 현재 퇴직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15조(피선거권) ① 공사에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3. 2급 이상의 임직원,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자

제16조(선거인명부)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7조(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실시하되,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8조(명부 수정) 선거인 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지적한 근로자가 있을 시에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및 추가하고 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19조(노동이사 후보의 선출) ① 노동이사 후보는 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노동이사 후보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2인 이상을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26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선거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노동이사 후보를 선출한다.

제20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전자투표방식에 의한 무명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근로자 1인 1표로 한다.

- ③ 투표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한다.
- ④ 투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제22조(투표·개표사무) 투표·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제23조(개표) ① 투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선거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 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의결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선거의 처리) 위원은 선거 기간 중 제13조 각 호의 위반 또는 기타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제 8 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거나 1명인 때. 다만, 재선거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노동이사 후보로 선출된 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도지사의 임명 전에 사퇴·퇴직·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할 대상이 없게 된 때

3. 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19조 제2항 및 3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의 오류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보궐선거) 노동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9 장 보 칙

제2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규정의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0조(징계회부) 위원회는 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공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 칙<19.6.26>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진 3×4cm
성 명	김 청 령(金靑廉)		
주 소	경기도 〇〇시 〇〇길 〇〇 대한아파트 101-501		
생년월일	1970년 1 월 1 일(만48세)	사원번호	600101
소속부서	〇〇부서	직 급	〇급
근무이력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2005. 2. 1. ~ 2008. 4. 30.	〇〇부서 대리	
	2008. 5. 1. ~ 2017.12. 31.	〇〇부서 과장	
위와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〇 월 〇 일 입후보자 : 김 청 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입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〇〇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 후보 자 추천서

□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 : 소속 ○○부서 성명 김 ○ ○

상기인을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소속부서	사원번호	성 명	서 명
1	○○부서	750614	홍길동	홍길동
2	○○부서	601018	전우치	전우치
3	○○부서	700808	홍경래	홍경래
4	○○부서	730429	장길산	장길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3호】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경기도 ○○시 ○○길 ○○
성 명 : 김 청 렬
사 원 번 호 : 600101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경기도 ○○시 ○○길 ○○
성 명 : 김 청 렬
사 원 번 호 : 600101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4호】

선 거 결 과 공 고

20 년 〇월 〇일 실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〇 월 〇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기 호	성 명	득 표 수	비 고
1	김 청 렬	480	당 선
2	이 기 상	380	당 선